

- 해외직구 관련 -

핵심 질의·응답 매뉴얼

2016. 3.

관세청
특수통관과

목차

1. 목록통관은 무엇인가?	1
2. 목록통관이 가능한 금액은?	1
3. 목록통관에 운임,보험료가 포함되는지?	1
4.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면 전부 과세되는지	2
5.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은?	2
6.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?	3
7. 건강기능식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	4
8. TV의 목록통관 가능여부	4
9. 화장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	5
10. 아기분유의 통관절차는?	6
11. 고양이 사료의 통관절차는?	6
12. 주방용칼의 목록통관 가능여부	6
13. 조리기구(냄비, 후라이팬, 유아용식기)의 목록통관 가능여부	7
14. 향수의 목록통관 가능여부	7
15. 담배의 목록통관 가능여부	7
16. 맥주(주류)의 목록통관 가능여부	7
17. 제빵재료(밀가루 등)의 목록통관 가능여부	8
18. 한꺼번에 구입한 의류와 식료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	8
19. 동일날짜에 도착한 여러개의 화물의 과세방법은?	9
20. 무료배송인 경우, 운임 적용방법은?	9
21. 할인쿠폰을 사용한 경우, 가격 적용은?	9
22. 예상세액 계산방법은?	10

1

목록통관은 무엇인가?

- 송수하인 성명, 전화번호, 주소, 물품명, 가격,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
 -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,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되고,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만 이용가능
 - 목록통관시에는 수입신고와 달리 화주의 주민등록번호(개인통관고유부호 포함)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

2

목록통관이 가능한 금액은?

-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불이하임
 - 다만, 한미 FTA에 따라, 미국에서 구입하여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 미화 200불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함

3

목록통관에 운임·보험료가 포함되는지?

-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임
 - 목록통관 기준금액인 물품가격에는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미포함되나,
 -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내륙운임, 보험료는 포함됨

4

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면 전부 과세되는지?

- 일반수입신고시에는 총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
 -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,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닌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됨

5

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은?

- 아래표와 같이 의약품, 건강기능식품, 검역대상물품 등과 한약재는 목록통관에서 배제(⇒정식 수입신고절차를 밟아 통관여부 결정)

<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예시 >

번호	구분	예시(빈번 반입품)
1	의약품	파스, 반창고, 거즈 · 붕대, 향생물질 의약품, 아스피린제제, 소화제, 두통약, 해열제, 감기약, 임신테스터기, 발모제 등
2	한약재	인삼, 홍삼 등
3	야생동물 관련 제품	'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·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(CITES)'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(예) 상아제품, 악어가죽 제품, 뱀피 제품 등
4	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	커피(원두 등), 차, 견과류, 씨앗, 원목, 조제분유, 고양이 · 개 사료, 햄류, 치즈류 등
5	건강기능식품*	비타민 제품, 오메가3 제품, 프로폴리스 제품, 글루코사민 제품, 엽산 제품, 로열젤리 등
6	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	짜퉁 가방 · 신발 · 의류 · 악세사리 등
7	식품류 · 주류 · 담배	비스킷 · 베이커리, 조제커피 · 차, 조제과실 · 견과류, 설탕과자, 초콜릿식품, 소스 · 혼합조미료 · 담배 · 주류 등
8	화장품	(기능성화장품(미백 · 주름개선 · 자외선 차단 등), 태반화장품,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)
9	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	
10	통관목록 중 품명 · 규격 · 수량 ·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	
11	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	총포 · 도검 · 화약류, 마약류 등

* 이 표에서 설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용어로, 식약처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상이할 수 있음

6

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?

- 의약품,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아래표와 같음
 - 아래표의 기준에 따라, 자가사용인정기준에 포함되더라도,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따름
 - 자가사용 인정기준(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67조 및 [별표 11])

종 류	자가사용인정기준	비 고
VIAGRA 등 오·남용우려의약품		○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
건강기능식품*	총 6병	○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(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) 면제 다만,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- CITES규제물품(예: 사향 등) 성분이 함유된 물품 -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- 에페드린, 놀에페드린, 슈도에페드린, 에르고타민,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
의약품	총 6병 (6병 초과인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)	○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. 다만, 환자가 질병치료 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

*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·가공한 식품(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2조)

7

건강기능식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

- 의약품,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대상에서 제외됨(정식수입신고대상)
 - 다만, 개인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6병까지는 별도의 요건확인(수입승인)을 받을 필요없이 통관가능하며,
 - 6병을 초과할 경우, 식약처장(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)의 수입승인 또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통관을 할 수 있음
 -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한 6병의 물품가격과 총 물품가격이 150불* 이내인 경우,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
 - * 미국에서 반입되는 특송화물로서, 200불 이내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목록통관이 배제되므로, 총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면 과세처리

8

TV의 목록통관 가능여부

- TV는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(적합성 평가)를 갖춰야 통관가능함
 - 다만,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TV의 경우 개인당 1대만 수입요건 없이(적합성 평가 면제)와 통관 가능함

- 화장품*은 기능성화장품, 태반함유화장품,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함(「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별표1)
- * 「화장품법」에 따른 화장품으로 기초·색조화장품 뿐만 아니라 목욕용 제품류, 인체 세정용 제품류, 방향용 제품류, 두발 염색용 제품류, 두발용 제품류, 손발톱용 제품류, 면도용 제품류, 체취 방지용 제품류 등도 포함
- 수량과 관련해서 별도의 개인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없으며,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함
- 기능성화장품이란 「화장품법」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함
-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
 -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
 -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
- * 향후 기능성화장품에 탈모방지 기능제품 추가 등 「화장품법」 개정 시 개정사항 반영
- 품명·규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은 목록통관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·규격 항목에 “기능성 없음” 표시 권고 (예 : non-functional cosmetic, cosmetic without function 등)
-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인 경우,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

10

아기분유의 통관절차는?

-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됨
 - 검역기관의 확인을 거쳐 통관이 가능한 물품으로 인정되면, 세관통관절차(정식수입신고절차)가 진행됨
 - 1회 5kg만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되며,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

11

고양이 사료의 통관절차는?

- 고양이 사료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됨
 - 검역기관의 확인을 거쳐 통관이 가능한 물품으로 인정되면, 세관통관절차가 진행됨
 -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

12

주방용 칼의 목록통관 가능여부

- 주방용 칼이 명백하고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라면 목록통관이 가능함
 - 다만, 품명, 모델, 규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되면 목록통관이 배제될 수 있으며, 제품확인을 위해 세관검사가 진행될 수 있음
 - 또한, 주방용이 아닌 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,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수입신고 후 통관이 가능함(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초과 시 관세·부가세를 납부)

13**조리기구(냄비, 후라이팬, 유아용 식기)의 목록통관 가능여부**

-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내이면서, 자가사용 물품만 목록통관이 가능함

14**향수의 목록통관 가능여부**

-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내이면서,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60ml 이하(병수 제한 없음)의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함

15**담배의 목록통관 가능여부**

- 담배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납부 대상으로 일반수입신고 대상임
 - 다만,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켈런 200개비, 엽권련 50개비,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됨

16**맥주(주류)의 목록통관 가능여부**

- 주류는 주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수입신고 대상임
 - 다만,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(1병)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됨

17**제빵재료(밀가루 등)의 목록통관 가능여부**

- 농산물은 목록통관에서 배제(정식수입신고대상)
 - 품목당 5kg이하는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정되며, 총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
 - 다만, 제빵재료로 구입하는 양귀비씨앗 중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금지하고 있는 품종은 발아여부와 상관없이 통관이 불허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, 아래 품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꼭 확인해야함
 - ※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 가목에 양귀비과(科)의 파파베르 슴니페룸 엘(Papaver somniferum L)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·시(Papaver setigerum D·C) 2종을 마약류에 해당하는 양귀비로 지정
 -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서도 파파베르 슴니페룸 엘의 양귀비종(씨앗 포함)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였음

18**한꺼번에 구입한 의류와 식료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**

- 의류는 목록통관이 가능하나, 식료품은 목록통관에서 배제됨
 - 그러나, 목록통관대상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한번에 반입될 경우,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됨
 - ※ 현 제도상 1개의 송장에 1개의 수입신고를 인정하고 있어, 보다 엄격한 절차가 적용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수입신고방식을 결정
 - 이렇게 목록배제되는 경우,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

19**동일 날짜에 도착한 여러개의 화물의 과세방법은?**

-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합산과세됨
 - 1) 하나의 선하증권(B/L)이나 항공화물운송장(AWB)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
 - 2)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(B/L 또는 AWB기준)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. 다만,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.
 - 3)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
- 합산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(미화 150불, 미국은 200불)을 초과하면 목록통관이 배제되고, 정식수입신고대상임
- 이렇게 합산과세 되면,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

20**무료배송인 경우, 운임 적용방법은?**

- 해외인터넷사이트(판매사이트)에서 배송료 할인행사를 하는 경우, 공식적으로 제한없는 할인(예 : 금액과 상관없이 할인)의 경우에는 해당 운송비를 할인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
 - * 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 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음

21**할인쿠폰을 사용한 경우, 가격 적용은?**

-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, 축하금, 일정금액 이상 구입 시의 할인쿠폰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할인금액은 할인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
 - * 운송업체, 카드사 등이 부담한 할인금액은 공제하지 않음

□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

구분	세액	
관세	과세가격 × 관세율	
내국세	개별소비세	(과세가격 + 관세) × 개별소비세율
	주세	(과세가격 + 관세) × 주세율
	농어촌특별세	개별소비세액 × 농어촌특별세율
	교육세	개별소비세액 × 교육세율 주세액 × 교육세율 ※ 해당 세액이 있는 경우에 부과
	부가가치세	(과세가격 + 관세 + 개별소비세 + 주세 + 농어촌특별세 + 교육세) × 부가세율 10%

※ 종가세 기준이며, 세액은 경우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□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(예시)

예시	세액 계산
의류	○ 과세가격 : 200,000원 ⇒ 예상세액 : 48,600원 - 세액 48,600원 = ①관세 26,000원(과세가격 200,000원 × 관세율 13%) + ②부가가세 22,600원((과세가격 + ①) × 부가세율 10%)
담배 (1보루)	○ 과세가격 : 200,000원 ⇒ 예상세액 : 117,610원 - 세액 117,610원 = ①관세 80,000원(과세가격 200,000원 × 관세율 40%) + ②부가가세 28,000원((과세가격 + ①) × 부가세율 10%) + ③담배소비세 6,410원 + ④지방교육세 3,205원 ※ 담배 1보루당 담배소비세(6,410원), 지방교육세(3,205원) 별도 부과
와인	○ 과세가격 : 200,000원 ⇒ 예상세액 : 136,490원 - 세액 136,490원 = ①관세 30,000원(과세가격 200,000원 × 관세율 15%) + ②주세 69,000원((과세가격 + ①) × 주세율 30%) + ③교육세 6,900원(② × 교육세율 10%) + ④부가가세 30,590원((과세가격 + ① + ② + ③) × 부가세율 10%)

※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는 관세, 부과세는 면제되며, 관세율은 관세의 종류(예 : FTA 협정 관세)에 따라 달라짐